

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3. 10.

제 출 자 : 마 포 구 청 장

1. 개정이유

본 조례 제8조에 기금의 융자대상 등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 제1조 목적조항에 기금의 지원대상을 마포구 관할구역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수도권안에서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바, 이를 상호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 개정골자

본 조례의 목적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대상 관련 내용은 본 조례 제8조에 기금의 융자대상 등에 관하여 별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(안 제1조 관련).

3. 근거법령

- (1) 지방자치법(2003.7.18 법률 제6927호) 제133조
- (2) 중소기업기본법(1998.2.28 법률 제5529호) 제3조
- (3)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(2002.12.30 법률 제6842호) 제43조

4. 조 례(안) : 별첨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6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(2003.7.25~8.14)결과, 의견제출 없음
- 나.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03.9.8)
- 다.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서울특별시마포구(이하 “구” 라 한다) 관할구역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수도권 안에서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” 을 “서울특별시마포구(이하 “구” 라 한다)가 중소기업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133조 및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<u>서울특별시마포구(이하 "구" 라 한다) 관할구역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수도권 안에서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, 그 관리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--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마포구(이하 "구" 라 한다)가 중소기업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